

의정부지방법원 2021. 7. 13 선고 2020나219714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

전 문

원고, 항소인 A

피고, 피항소인 1. B

2. C

변 론 종 결 2021. 6. 15.

판 결 선 고 2021. 7. 13.

제1 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0. 11. 4. 선고 2019가단111370 판결

주 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들은 원고에게 남양주시 D 임야 7,141㎡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18. 7. 2. 접수 제7193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제1심 판결문 이유를 인용하되(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),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.

갑5부터 갑21, 변론 전체의 취지 등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 즉, 원고(1950.생)가 2010. 11.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서울 광진구 H 지상 건물은 등기부상 5층 고시원 건물로 각 호실 별로 구분등기가 되어 있지 않고, 5층 면적은 59.45㎡, 옥탑 면적은 11.7㎡로 표시되어 있다. 원고는 그 건물에 호실을 특정하지 않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, 5층에서 배우자와 함께 거주해 왔다(1층부터 4층까지는 고시원으로 임대함). 원고의 아들인 J(1979.생)는 배우자와 함께 2011. 12. 원고로부터 무상사용 허락을 받고 그 건물 K호(등기부상 옥탑부분을 임의로 K호로 표시하였다고 한다)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생활해 오다가, 2013.에는 아들을 2014.에는 딸을 낳았다. 원고는, 2017. 9. 무렵 원고 부부는 5층에서 아들 J 가족들은 옥탑(등기부상 11.7㎡로 표시되어 있으나, 실제로는 27.81㎡라고 한다.)에서 각자 독립적으로 생계를 꾸려나갔기 때문에 J는 원고의 동거인이 아니라고 주장한다. 그러나, 원고가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그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고, 오히려 그 자료들에 의하여 확인되는 건물 규모와 구조 및 이용상황, 원고 및 아들 J 가족구성원 규모와 관계, 특히 아들 J 가족의 옥탑 무상사용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및 아들 J 가족들은 그 건물 5층과 옥탑에서 함께 생활한 것으로 보이므로 아들 J는 원고의 동거인에 해당한다.

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.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,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박이규, 판사 황현찬, 판사 이효두